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1.21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1-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-5 일원		
의결번호	2017-31-3	심의결과	보 류(소위원회자문 선행)

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라며, 반영여부는 소위원회 자문을 선행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건축 분야 >

계획분야

- 공공보행통로 상의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고, 공공보행통로 쪽으로 돌출된 105동의 배치계획을 재검토 바람.
- 공공보행통로 상에 중복 배치한 공개공지 위치를 재검토하고, 공개공지는 기능과 목적에 맞게 재계획하기 바람.
- 전체적인 배치계획에서 주동 외곽선들의 각도를 맞추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 (102동의 경우 틀어진 각도가 애매하여 지하·지상층 평면이 복잡해지고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음)
- 주동의 입면디자인이 산만해보이고 기단부(판매시설)도 조화롭지 못하므로, 재계획하기 바람.
- 어린이집, 경로당 평면계획이 기둥열 등으로 불합리하므로, 이용이 편리하도록 재계획하기 바람.
- 주동 코어계획이 불합리한 사례(승강기홀 자연채광 및 통풍 미흡, 마주 보는 승강기를 엇갈리게 배치, 사공간 과다)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.(101~104동)
- 지하주차장의 차량동선 체계가 복잡하므로 세대 하부 벽체를 가급적 오픈하여 차량의 움직임이 보이도록 계획 바람.
- 주차램프에 근접 배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.

- 계속 -

2017.11.2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1.21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1-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-5 일원		
의결번호	2017-31-3	심의결과	보 류(소위원회자문 선행)

[심의 내용]경관 + 건축 심의

< 건축 분야 >(계속)

계획분야(계속)

- 지하층 외벽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요철 부분을 단순화하기 바람.
- 지하3,4층의 장애인 주차면은 적절하게 코어 주변으로 분산 배치하기 바람.
- 옥상층의 태양광 패널은 음영의 영향이 없도록 위치 조정을 검토 바람.

구조분야

- 101동과 103동은 연결부의 비틀림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면밀히 검토 바람.
- 기준층 하부 기둥들은 상층부와의 강성 변화를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검토 바람.
- 지하철 상부 및 인접 구조물의 진동·소음 등 사용성을 검토 바람.
 - 지하1층 진동·소음, 지하철 인접 주동 진동 등

방재분야

-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지상2층 각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법적 기준인 50m이하가 되도록 계획하고, 면적·이용인원·피난안전등을 고려하여 계단 1개소의 추가 설치를 검토 바람.

조경분야

- 전체적인 외부공간 및 녹지계획(녹지구상, 외곽녹지, 옥상녹화, 어린이놀이터 등)을 재검토 바람.

교통분야

-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배치는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기 바람. 끝.

2017.11.2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